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3

발의연월일: 2024. 7.11.

발 의 자 : 김 윤 · 민병덕 · 임미애

박희승 · 김남희 · 조 국

서미화 · 정진욱 · 강준현

이재강 • 백승아 • 조계원

이수진 • 이기헌 • 김선민

남인순 · 한창민 · 홍기원

김영배 · 강선우 · 윤종오

정준호 • 박정현 • 전종덕

전진숙 · 정혜경 · 서영석

김남근 • 모경종 의위

(29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의 강화와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가 필요함.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8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 를 위한 사업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의료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		
	<u>한 사업</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